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66

발의연월일: 2020. 7. 10.

발 의 자: 장철민·김진표·임오경

박영순 • 윤미향 • 최종윤

안호영 · 홍영표 · 맹성규

양이원영 · 송옥주 · 김민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두고 있고,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사업주를 근로자로 보아 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배우자, 부모·자녀 등 동거하는 친족이 함께 일하는 영세한 사업체에서 사업주는 특례 규정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함께 일하는 친족은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형태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업무상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적절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에 근로 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4조).

법률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의 제목 중 "사업주"를 "사업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을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그 사업주는"을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 중 "사업주"를 각각 "사업주 등"으로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 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 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u>람은</u>-----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신 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 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사 <신 설> 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 -----사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 업주 등-----

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
정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	한
다.				

-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 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금액으로 한다.
- ④ (생략)
- ⑤ 중·소기업 <u>사업주</u>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 다.
- ⑥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 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u>\lambda</u>
업주 등
<u>.</u>
④ (현행과 같음)
⑤사업주 등
6
사업주 <u>등</u> -
•